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

- 1) 범 위 : 기본재산 적립, 인재육성장학금, 운영비
- 2) 출연금액 : 462,200천원

-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

1) 범 위

- 구립도서관 5개소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
 - 구립도서관: 대림·문래·선유·여의샛강·SK생각공장(가칭) 도서관
 - 작은도서관: 밤동산·대림1동(가칭) 도서관
- 그 외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
- YDP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2) 출연금액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5,453,000천원
- YDP창의예술교육센터: 458,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동의안은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미래교육과 소관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 71 호
----------	--------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영등포구 장학재단

나. 관련근거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다. 사업내용

- 1)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및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

라. 출연 필요성

- 1) 2015년 4월 구 출연금(5억)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기부금 수입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운용소득(이자수익)이 적어 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힘든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구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재)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마.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소요예산)

1) 범 위 : 기본재산 적립, 인재육성장학금, 운영비

2) 출연금액 : 462,200천원

※ 2023년도 (재)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제16조(재정지원)

참 고 사 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구의 출연금
 -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의안 번호	제 72 호
----------	--------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영등포문화재단

나. 관련근거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설립 및 위탁)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의 추진 등) 및 제6조(사업의 지원)

다. 사업내용

- 1) 구립 및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
- 2)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사업
- 3) YDP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라. 출연 필요성

- 1) 구립 및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영등포구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

- 2) 아동·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감성교육을 위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로 운영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

마.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소요예산)

1) 범 위

- 구립도서관 5개소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
 - 구립도서관: 대림·문래·선유·여의샛강·SK생각공장(가칭) 도서관
 - 작은도서관: 밤동산·대림1동(가칭) 도서관
- 그 외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
- YDP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2) 출연금액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5,453,000천원
- YDP창의예술교육센터: 458,000천원

※ 2023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3)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운영재원 등)
-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 및 관리)

-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설립 및 위탁)
-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의 추진 등) 및 제6조(사업의 지원)

참 고 사 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의 추진 등) 및 제6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설립 및 위탁)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